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1093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범

변 론 종 결 2024. 5. 7.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3. 8.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7. 6. 9.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22. 6. 9.,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2019. 12.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여 2022. 5. 9. C는 원고에게 9,338,771원 및 그중 4,996,178원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1가소14746).

다. 피고는 C의 형으로 피고와 C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망인은 2023. 3.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F, G, H, C, I은 2023. 8. 28.경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32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6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6. 29.경 시세가 120,409,800원 상당이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J조합으로 하여, 1997. 7. 26. 채권최고액 30,000,000원, 2005. 9. 26. 채권최고액 13,000,000원, 2012. 3. 14. 채권최고액 8,000,000원, 2016. 9. 30. 채권최고액 9,600,000원, 2018. 7. 16.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대출금은 아래 기재와 같고 대출원금 합계가

83,100,000원 상당이다.

순번	대출금융기관	대출일시	대출원금	대출잔액	대출계좌번호
1	J조합	1997. 7.31.	20,000,000	0	(계좌번호 1 생략)
2		2005.9.28.	10,000,000	10,000,000	(계좌번호 2 생략)
3		2008.4.22	6,000,000	6,000,000	(계좌번호 3 생략)
4		2009.4.8.	7,600,000	7,500,000	(계좌번호 4 생략)
5		2012.3.14.	6,000,000	6,000,000	(계좌번호 5 생략)
6		2014.9.12.	9,000,000	9,000,000	(계좌번호 6 생략)
7		2016.9.30	8,000,000	8,000,000	(계좌번호 7 생략)
8		2018.7.16	16,500,000	13,150,000	(계좌번호 8 생략)

③ 피고는 위 표 중 순번 1번 대출에 대하여 2017. 9. 11.경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④ 피고는 1956년생으로 망인(1929년생)의 장남인데 1986. 12. 28.경부터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망인을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피고가 부모를 부양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소유하도록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출한 금원에 대하여 일부라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면 C 뿐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별지